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비목이 개편됨에 따라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경비 범위와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 대상 경비 범위에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. ~ 12. 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

제65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
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

제102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수납후 징수결정) ①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, 한국은행등,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(이하 “국고대리점”이라 한다), <u>미래창조과학부장관</u> 이 설치한 체신관서(이하 “체신관서”라 한다), 「국세징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(이하 “국고금납부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, 한국은행등, 국고대리점,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(이하 “수납증빙서류”라 한다)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.	제5조(수납후 징수결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2조(관서운영경비의 범위)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	제52조(관서운영경비의 범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

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(생략) 제65조(현금지급) 영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0. (생략) <u><신설></u> 11. (생략) 제102조(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)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	-----. -----.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65조(현금지급)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</u> 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 제102조(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) ----- ----- ----- <u>행</u> <u>정안전부장관</u>----- -----.
--	--